

[3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운영규정

제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제공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기관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③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자기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적용한다.

4. 서비스 품질보장

① 비밀보장: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② 기록 및 공개: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

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③ 부당청구금지: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10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이용계약서(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를 작성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① 수급자의 안전한 재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③ 방문목욕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④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⑤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제11조 (신원인수인의 의무와 권리)

1. 신원인수인의 의무

-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2조 (계약의 해제)

1. 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

지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⑥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⑦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 ⑧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⑨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에 지장을 줄 때
 - ⑩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
났을 때
3. 대상자(보호자)는 제11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
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4. 기관은 제11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
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보호자)에게 통보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4장 서비스 내용과 비용 부담에 관한사항]

제13조 (서비스내용)

-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1.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
도움, 화장실이용하기, 기저귀교환,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유지증

진,운동 및 일상생활의 보조 등

2. 가사활동지원 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3. 개인활동지원 서비스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금전관리, 각종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지원 등

4. 정서지원 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5. 방문목욕 서비스

6. 치매관리지원 서비스

7. 응급지원 - 응급상황 대처

제14조 (방문요양-방문당)

1.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에 의거 산정한다.

-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방문요양의 급여내용은 제12조에 따른다.

3.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가산

① 야간가산 :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② 심야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③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④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⑤ 가산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4.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산정특례

①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또는 폭력행위, 방해행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일기관 요양보호사 2인이 동시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이 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가-3”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이 경우 수급자 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가사활동 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수행한 경우 산정한다.

③ 정서지원(말벗,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에 소요된 시간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④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1) 수급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제15조 (방문목욕-방문당)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에 따라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

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3.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4.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5.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 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제16조 (월 이용한도, 이용료 및 기타 부담액)

1. 월 이용한도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에 따른다.

2.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익월 5일에 정산하고 대상자(보호자)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3. 대상자(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 또는 현금, 카드결제로 30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기관은 대상자(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5. 본인부담금의 요율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에 따른다.

제17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4. 변경절차는 이용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이용자(보호자)와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 2022년도 수가 변경사항 안내 ◆

» 수가변경 사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제13조 재가급여 월 한도액, 제18조 방문요양 급여비용, 제25조 방문목욕 급여비용)

» 시행시기 : 2022년 01월부터

» 2022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 2022년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시 간	금액(원)	시 간	금액(원)	시 간	금액(원)	시 간	금액(원)
30분이상	15,430	60분이상	22,380	90분이상	30,170	120분이상	38,390
150분이상	44,770	180분이상	50,400	210분이상	56,170	240분이상	61,950

» 2022년 방문목욕 1회당 급여비용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78,58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 내 목욕)	70,85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 안 한 경우	44,240

» 수급자 자격 별 급여비용 본인부담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생활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6%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	9%
·저소득층(본인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